**「유언검인 및 집행법(제40조~제55조)」**

[법률 제251호, 2016.6.10., 개정]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Sale by order of court**  **40.** The court may, on application by a receiver appointed under section 39, or any person interested in the estate, order the sal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such property, if it appears that such sale will be beneficial to the estate.  **Application of rules relating to receivers**  **41**. A receiver appointed under section 39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Court (Cap. 322, R 5) relating to receivers generally, but the Public Trustee shall not be required to furnish security.  **Penalty**  **42.** Any person who, without lawful authority, removes or attempts to remove from Singapore any portion of the property of which a receiver has been appointed under section 39, or destroys, conceals, or refuses to yield up the same to the receiver,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by a Magistrates’ Court to a fine not exceeding $1,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both.  **No suit against receiver**  **43.**—(1) No suit shall be brought against a receiver appointed under section 39 in relation to anything done or intended to be done by him in respect of the property of the deceased in exercise or intended exercise of the powers vested in him.  (2) Any person aggrieved by anything so done, or intended to be done, may apply to the court for directions in the matter, and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in the premises as is just.  **Receiver’s lien**  **44.** A receiver appointed under section 39 shall have a lien upon the property entrusted to him for all costs and expenses properly incurred by him in the exercise of his duties as such receiver.  **45.** [Repealed by Act 27 of 2014 wef 01/01/2015]  **PART X**  **RE-SEALING OF PROBATES AND LETTERS OF ADMINISTRATION GRANTED OUT OF SINGAPORE**  **Interpretation**  **46.** In this Part —  “Commonwealth”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be deemed to include any country in the Commonwealth which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specify to be a country to which this Part applies;  “court of probate” means any court or authority by whatever  name designated, having jurisdiction in matters of probate;  “probate” and “letters of administration” include confirmation in Scotland and any instrument having in any country or territory the same effect which, under the law of Singapore, is given to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respectively.  **Power of court to re-seal**  **47.**—(1) Subject to subsections (3) and (4), where —  (a) a court of probate in any part of the Commonwealth has, either before, on or after 25th February 1999, granted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in respect of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or  (b) a court of probate in a country or territory, being a country or territory declared by the Minister under subsection (5) as a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this subsection applies, has, on or after a date specified by the Minister in respect of that country or territory (referred to in this section as the relevant date), granted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in respect of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the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so granted, or a certified copy thereof, sealed with the seal of the court granting the same, may, on being produced to and a copy thereof deposited in the High Court, be sealed with the seal of the Family Justice Courts.  (2) Upon sealing under subsection (1), the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shall be of the like force and effect, and have the same operation in Singapore, as if granted by the High Court to the person by whom or on whose behalf the application for sealing was made.  (3) Before the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is sealed with the seal of the Family Justice Courts, the High Court may require such evidence as it thinks fit as to the domicile of the deceased person.  (4) If it appears that the deceased was not, at the time of his death, domicil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rom which the grant was issued, the seal shall not be affixed unless the grant is such as the High Court would have made.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b),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  (a) declare any country or territory, which is not a part of the Commonwealth, as a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subsection (1) applies; and  (b) specify the relevant date in respect of that country or territory which may be a date before, on or after 25th February 1999.  **Provisions for estate duty**  **48.** The provisions of the Estate Duty Act (Cap. 96), including the penal provisions thereof, shall apply as if the person who applies for sealing under this Part were an executor within the meaning of that Act, and section 42 of that Act shall apply with the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re-sealing of grants under this Part.  **Security on re-sealing letters of administration**  **49.**—(1) Before the sealing of letters of administration under this Part, the administrator or his attorney shall give security by a bond in the prescribed form for the due administration of the estate.  (2) Such security shall be subject to section 29 relating to security to be given in the case of a grant of letters of administration.  **Security for creditors in Singapore**  **50.**—(1) Where the deceased has carried on business or resided in Singapore within 12 months of his death, the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a creditor of the deceased or otherwise, before a grant of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is re-sealed, require adequate security to be given for the payment of debts due to creditors residing  in Singapore.  (2) Any such creditor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registrar, requiring that he be notified of any application for the sealing of a grant of probate under this Part; and no such grant shall be sealed before the expiration of 7 days after service on such creditor of a  notice in writing of an application for sealing.  **Notice of sealing**  **51.** Notice of the sealing of a grant under this Part shall be sent forthwith by the registrar to the court from which the grant is issued.  **Notice of revocation**  **52.** When notice has been received by the court of the re-sealing of a grant issued in Singapore, notice of any revocation or alteration of the  grant shall be sent forthwith by the registrar to the court so re-sealing the grant.  **53.** [Repealed by Act 27 of 2014 wef 01/01/2015]  **PART XI**  **GENERAL**  **Order to bring in will, etc.**  **54.** The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interested, if it appears that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any will or other testamentary document of a deceased person is in the possession or under the control of any person, or that any person has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such a will or document, order that that person do, within a time named, produce the will or document at the registry, or attend at a time named before a court, for the purpose of being examined in relation to the will or document.  **Grant to Public Trustee in cases of delay**  **55.**—(1) In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fter the expiration of 6 months from the death of a deceased person, no application has been made for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to his estate;  (b) where any such application, though made within the said 6 months, has not within that period been proceeded with, or has been withdrawn or refused;  (c) where any person, who has received a grant of letters of administration with or without the will annexed, neglects within one month of the date of the grant to give such security as he is lawfully required to furnish;  (d) where a receiver may be appointed under section 39, but it appears that such appointment would not be a sufficient protection for the estate;  (e) where an administrator has failed to extract the grant of letters of administration; or  (f) where after the death of a last surviving executor or administrator of a deceased person’s estate 6 months have elapsed and no application for the representation of the estate has been made, letters of administration with or without the will annexed may be granted to the Public Trustee, or to such other person as the court thinks fit.  (2)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so as to prevent the Public Trustee from applying for or being granted letters of administration of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with or without the will annexed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6 months of the death of the deceased. | **법원명령에 의한 매매**  **제40조** 매매가 상속재산에 이로울것이라 여겨지는 경우,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수령인 또는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으로, 법원은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매를 명령할 수 있다.  **수령인관련 규칙 적용**  **제41조** 제39조에의해 지정된 수령인은 일반적으로 수령인에 대한 ‘법원규칙’(법률 제322호, R5) 적용대상이 되지만 수탁관리인은 담보제공이 요청되지 않는다.  **벌칙**  **제42조** 합법적 권한 없이, 싱가포르에서 제39조에 의해 지정된 수령인의 재산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 또는 수령인에게 그것을 파괴, 은폐 또는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유죄가 되며 치안법원에서 $1000미만의 벌금형 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한다.  **수령인에 대한 소송금지**  **제43조** (1)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수령인에게 주어진 권한의 행사로 또는 그것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가 행한 또는 행하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되지 않는다.  (2) 그러한 행위로 또는 행하려는 의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그 문제에 대한 지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성을 이유로 전술한 사항에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령인의 유치권**  **제44조** 제39조에 의해 지정된 수령인은 해당 수령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행사하면서 그에의해 적절하게 발생된 모든 비용과 경비를 위하여 그에게 위임된 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  **제45조** [2014년 법률 제27호로 삭제됨.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함.]  **제10장**  **싱가포르 국외에서 승인된 유언검인과 유산관리장의 재봉인**  **해석**  **제46조** 이 장에서,  “커먼웰스”는 이 장의 목적상, 장관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 장이 적용되는 국가로 특정할 수 있는 커먼웰스에 있는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언검인법원”은 지정된 명칭과는 별개로 유언검인 문제에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유언검인” 및 “유산관리장”은 스코틀랜드에서의 인준과 국가나 지역에서,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에 각각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  **재봉인 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제47조** (1) 제(3)항과 제(4)항과 관련해서,  (a) 커먼웰스의 일부에 있는 유언검인법원이 1999년 2월 25일 이전, 그날 또는 그 이후에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을 승인한 경우, 또는  (b) 제(5)항에 따라 장관이 이 항이 적용된다고 한 국가나 지역으로 선언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유언검인법원이, 그 국가나 지역(같은 조를 관련일로 참조)에 대하여 장관이 특정한 날에 또는 그 날 이후에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을 승인하는 경우,  그렇게 승인된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 또는 동일하게 승인된 법원의 인장으로 봉인된 그에대한 공증된 사본은, 작성되어 고등법원에 제출된 그에 대한 사본으로, 가정법원의 인장으로 봉인될 수 있다.  (2) 제(1)항의 봉인때,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은 유사한 효력을 갖으며, 싱가포르에서 고등법원에 의하여 봉인이 이루어지도록 신청한 사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승인된 것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3)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이 가정법원의 인장으로 봉인되기 전에, 고등법원은 고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고인인 사망당시에, 승인이 교부된 법원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지않은것 같다면, 고등법원이 내린 그런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이 부착되지 않는다.  (5) 제(1)항제(b)호의 목적상, 장관은 관보에 통지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a) 커먼웰스의 일부가 아닌 국가나 지역을 제(1)항이 적용되는 국가나 지역으로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b) 1999년 2월 25일 이전, 그날 또는 그 후일이 될 수 있는 그 국가나 지역에 관한 관련일을 특정할 수 있다.  **상속세 규정**  **제48조** 이에대한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상속세법⌟(법률 제96호)의 규정은 이 장에 의해 봉인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의 의미의 유언집행인인 것처럼 적용되고 이 장에 따른 승인의 재봉인에 대한 필요적 수정을 거쳐 그 법 제42조가 적용된다.  **재봉인 유산관리장의 담보**  **제49조** (1) 이 장에 따른 유산관리장의 봉인 전에, 유산관리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상속재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규정된 형식의 채권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2) 그러한 담보는 유산관리장의 승인 경우에 제공된 담보와 관련있는 제29조의 적용대상이다.  **싱가포르에서 채권자를 위한 담보**  **제50조** (1) 고인이 사망 12개월이내에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거주하였던 경우, 법원은 사망자나 그 밖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의 재봉인 전에,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지급을위하여 적절한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채권자는 이 장에 따른 유언검인의 승인에 대한 봉인을 신청하였음을 고지 받고싶다고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승인은 봉인 신청의 서면 공지에 대한 해당 채권자에 대한 서비스 후 만료 7일전에 봉인된다.  **봉인공지**  **제51조** 이 장에 따른 승인의 봉인 공지는 등록관에 의해 곧 승인이 발행된 곳에서 법원으로 보내진다.  **철회공지**  **제52조** 공지가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승인의 재봉인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을 때, 승인철회 또는 변경의 공지가 등록관에의해 즉시 승인을 재봉인하는 법원으로 보내진다.  **제53조** [2014년 법률 제27호로 삭제됨. 2015년 1월 1일 발효됨.]  **제11장**  **일반사항**  **유언장에 대한 명령, 등**  **제54조** 이행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으로, 법원은 고인의 유언이나 다른 유언관련 문서가 소유 또는 어떤 사람의 관리하에 있거나 어떤 사람이 그러한 유언이나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유언장이나 문서에 관하여 검토될 목적을 위하여 유언장이나 문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또는 지정된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지연시 수탁관리인에게 승인**  **제55조** (1)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a) 고인의 사망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검인이나 유산관리장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되지 않은 경우,  (b) 그러한 신청이, 상기 언급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철회 또는 거절된 경우,  (c) 유언장의 첨부여부를 불문한 유산관리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제공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그러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무시하는 경우,  (d) 수령인이 제39조에 따라 지명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지명이 그 상속재산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  (e) 유산관리인이 유산관리장의 승인을 얻는데 실패한 경우, 또는  (f)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최후 생존 유산집행인이나 유산관리인의 사망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그 상속재산의 대리권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없는 경우, 유언장이 첨부된 것과는 별개로 유산관리장은 신탁관리인에게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다른 사람에게 승인될 수 있다.  (2)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신탁관리인이 고인의 사망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장 첨부여부와는 별개로, 유산관리장을 신청 또는 승인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